

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강성삼 의원

제출일 : 2025. 10.

1. 제안이유

- 가. 테니스장 전용 사용료를 인하하여 시민 부담을 줄이고, 관외 법인·단체 및 개인의 사용료와 이용료 할증률을 상향해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하고자 함
- 나. 별표 제목을 명확히 하고 규정의 위치를 조정해 체계를 정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테니스장 전용 사용료 인하 [별표 2]
 - 평일 15,000원 → 13,000원
 - 토·공휴일 25,000원 → 23,000원
- 나. 관외자 할증률 상향 [별표 2][별표 2의2]
 - 관외 법인·단체 및 개인의 사용료 및 이용료 할증률 상향 50퍼센트 → 100퍼센트
- 다. 별표 제목 변경[별표 2의3] ‘사용료’ → ‘배드민턴장 사용료’
- 라. 규정 체계 정비
 - 테니스장 관련 규정을 [별표 3]에서 [별표 2]로 이동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한종수)

- 본 조례안은 테니스장 전용 사용료를 인하하여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, 관외 이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할증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

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요금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검토 결과,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